

회원 입회 약정서

1. 회원자격의 심사와 승인

- 회원권의 양도양수는 클럽이 발급한 회원증을 첨부하여 회원명의변경을 신청하고 클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클럽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 회원권의 양수사실과 관계없이 회원으로서 입회할 수 없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2. 회원권의 구분 및 입회금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.

- 회원권의 구분 :
- 회원권 번호 :
- 입회보증금 :
- 입회승인일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입회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. 단,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회원과 클럽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만기를 연장 할 수 있다.

3. 본인은 향후 프리스틴밸리골프클럽을 이용함에 있어 클럽의 회칙과 이용약관, 클럽의 이용안내를 충분히 숙지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, 제한, 기간연장, 기타사항 등 회원운영 및 관리사항 전반에 대하여 클럽이 정하는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. 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입회계약의 해지 등 클럽에서 제재가 결정되면 이를 따를 것임을 확약한다.

-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.
-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언행으로 클럽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.
- 도박성 내기골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행위를 할 경우.
- 회원 또는 동반자가 그린 등 클럽의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할 경우.
- 기타 플레이어로서 에티켓 및 매너를 지키지 않아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경우.

본 약정서는 회칙에 우선하며, 본인은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 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상기사항을 충분히 설명 받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.

20 . . .

입회신청자

(인)

프리스틴밸리골프클럽 귀중